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3.

발 의 자 : 김소희·우재준·이현승
백종헌·김미애·추경호
김기웅·유용원·김장겸
박준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히트펌프(Heat Pump)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.

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(계절별 부하 특성, 외기 온도 등)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,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.

이에 따라 유럽연합(EU)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(SPF)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.

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

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0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아.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열에너지를 히트펌프 설비를 통하여 회수·이용하는 경우로서, 해당 히트펌프 설비가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(총 공급 열량/총 소비전력량) 2.875 이상 및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6조의4에 따른 성능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에너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재생에너지”란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아.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열에</u> <u> 에너지를 히트펌프 설비를</u> <u> 통하여 회수·이용하는 경</u> <u> 우로서, 해당 히트펌프 설</u> <u> 비가 난방 기간 계절성능</u> <u> 계수(총 공급 열량/총 소</u> <u> 비전력량) 2.875 이상 및</u> <u>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</u> <u> 제36조의4에 따른 성능 기</u> <u> 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 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</u> <u> 에 한하여 인정되는 에너</u>

<u>아.</u> (생략) 3. ~ 5. (생략)	<u>지</u> <u>자.</u> (현행 아목과 같음) 3. ~ 5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